

의안
번호

173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운 영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173
제 출 자	김육영 의원 외 10 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한상규

1. 제안이유

- 가. 「민법」 및 「행정기본법」이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(시행 2023. 6.28. 됨)에 따라 만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며
- 나. 상위법령 제·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
- 다. 조례 본문 체계상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“만” 표시 용어를 삭제함 (안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7항)
- 나. 상위법령의 제·개정사항 반영함 (안 제24조제11호, 제25조제8항)
- 다. 인용조문 변경 및 오류사항을 정비함 (안 14조부터 제16조까지, 제19조, 제2조부터 제23조까지, 제29조, 제3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민법」, 「행정기본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23. 8. 21. ~ 2023. 8. 26.

4. 검토 의견

- 안 제25조는 「민법」¹⁾ 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<시행 2023. 6. 28.>, 「행정기본법」²⁾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등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나이는 ‘만 나이’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고
- 안 제24조제11호 및 제25조 8항은 「검역법」³⁾ 제5조제1항(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)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⁴⁾ 등 상위법 내용을 반영 하였으며,
- 안 제29조 및 제30조는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제10조(영리업무의 금지) 및 제11조(점직 허가)제1항에의거 상위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함.
- 기타 개정안은 본문 체계상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여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
- 검토결과, 본 조례 일부개정(안)은 상위법령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1) 민법 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2) 행정기본법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3) 검역법 제5조(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)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(이하 “검역관리지역등”이라 한다)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3. 4., 2020. 8. 11.>

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·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3. 4.>

4)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부칙 <제31709호, 2021. 6. 1.>

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”을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